

SHOE 마크 인증범위의 승인, 유지, 확대, 축소, 정지 및 취소

1. 인증의 승인

1.1 인증분야 및 범위

대분류		중분류	
03	제조업	03.018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1.2 대상업체

대상업체는 해당제품의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체로서 해당제품의 인증범위와 품질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업체로 한다.

1.3 인증스킴 : Type 1b / 샘플이 형식시험 및 전체제품 대표

이 스킴의 유형은, 규정된 스킴에 따라 선택 및 (특성)결정에 이어서, 제품 전체 배치(batch)의 인증을 포함한다. 시험하는 비율은 배치의 모든 단위의 시험을 포함할 수 있고(100% 시험), 예를 들면 배치 내의 품목의 균질성과 적절한 샘플링 계획의 적용에 근거할 수 있다. 만일 (특성)결정, 검토 및 인증 결정의 결과(outcome)가 긍정적이라면 배치의 모든 품목은 인증된 것으로 설명될 수 있고, 인증 스킴에 포함되어 있다면 적합성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1.4 인증조건

제품심사결과 인증기준에 합격한 경우 심의하여 인증을 결정한다.

2. 인증의 유지

2.1 공급자는 약정사항에 따라 각종 윤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증 당시의 요건으로 유지·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2 공급자가 인증받은 제품임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BTP-SHOE-QP-01 라이선스 인증서 및 적합성 마크의 사용 절차서를 만족하여야 한다.

2.3 SHOE 마크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쌍방 합의에 따라 심사를 수행한 후 갱신된다. 단, 인증스킴 Type 1b형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은 없다.

2.4 공급자는 약정한 인증수수료를 약정서의 납부 조건에 따라 납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납입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3. 인증의 변경

3.1 지위승계

3.1.1 제품인증에 관련하여 생산하는 공장, 설비, 사람 등의 물리적인 사물의 이전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전부 즉 법적, 사회적·도덕적 책임과 권리가 동시에 승계되어 승계전의 모든 책임까지도 승계가 되는 경영권이 포괄적으로 이전됨을 의미한다.

3.1.2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의뢰자의 의무 중에 약정요구사항을 유지·관리할 의무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로 승계되어야 하므로 건물, 설비, 인력 등 생산시스템에 모든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3.1.3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 (1) 해당 제품인증을 받은 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은 경우
- (2) 사업을 상속받는 경우
- (3) 법인의 합병에 따라 존속하는 법

3.1.4 신고

인증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의뢰자의 공문으로 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인증서 원본
- (2)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양도 양수의 경우)
- (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속받은 경우)
-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의 등기부 등본 (합병의 경우)
- (5) 그 밖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1.5 제출된 서류가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인증제품을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위승계를 승인하고 재약정 체결 및 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단, 제출된 서류로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현지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인증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위승계를 보류한다.

3.2 인증서 재교부

의뢰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 교부받은 인증서 및 약정서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인증서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2) 의뢰자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
- (3)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 (4) 기타 인증서의 유효성에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3.3 소재지 이전

3.1.5 시설확충 등으로 소재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의뢰자는 공문서 형식을 취하여 소재지의 변경내용을 변경전과 변경후로 나누어 기재하고 새로 이전한 장소에서 인증제품을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 (3) 변동내역 신고서 (지위승계와 동일)
- (4) 인증서 원본

3.1.5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인증서를 변경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심사 기준 등에 미달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시정토록 조치한다.

4. 제품 인증의 확대

4.1 다음을 포함한 제품인증의 확대는 인증프로세스 절차서(BTP-SHOE-QP-09)의 인증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운영한다.

예) 인증 확대의 경우 : 신청서, 전 항목 제품평가, 평가검토 및 인증결정

4.2 업체가 동일모델 추가를 요구하는 경우, 인증책임자는 동일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문으로 접수하여 검토하고 인증서 재교부를 한다. 필요시 인증책임자는 전 항목 시험성적서의 첨부를 요청할 수 있다.

4.3 인증업체가 동일모델에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인증책임자는 동일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문으로 접수하여 검토하고 인증서 재교부를 한다.

5. 제품 인증의 축소 및 만료

- 5.1 인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인증 유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유효기간 이후 만료한다. 단, 인증스킴 Type 1b형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은 없다.
- 5.2 의뢰자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제품의 일부를 취소 신청하여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소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5.3 인증책임자는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인증업체와 협의하여 필요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받고 심사계획을 공문발송한 후 인증프로세스 절차서(BTP-SHOE-QP-09)에 따라 제품평가를 수행한다.

6. 제품 인증의 제재조치, 정지 및 취소

6.1 개선경고

인증기관은 제품인증과 관련하여 해당 인증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생산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면 서면으로 통보하고, 적절한 기간 내에 개선조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

- 6.1.1 과장광고(대리점 및 위탁판매 등 유통업체 포함)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
- 6.1.2 심사에 따른 시정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6.1.3 소비자의 정당한 보상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6.1.4 인증마크 수수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 6.1.5 인증제품에 대한 설계, 원재료, 공정 등 기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인증기관에 통보하여 승인받지 않은 경우

6.2 표시정지

제품인증과 관련하여 해당업체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면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표시정지를 시킨다. 단, 업체가 이의 제기한 경우 인증책임자는 재심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6.2.1 인증제품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 6.2.2 상기 6.1항에 의한 제품인증 개선 경고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 6.2.3 인증책임자는 인증 정지가 결정된 시점부터 인증 마크 사용을 중지, 인증제품을 시장에 출하금지 및 필요시 제품회수를 포함한 수정활동을 인증업체에 요구해야한다.

6.3 인증의 취소

제품 인증을 받은 자가 제품인증을 받은 동일품목에서 인증규격, 종류 및 등급을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해당 인증업체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다.

6.3.1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6.3.2 제품인증마크 표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1) 인증 받은 자가 다른 회사제품을 자체 제조제품으로 위장하여 규격표시를 할 때 등

(2) 인증 받은 자가 자체 제조제품을 다른 인증 받은 자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규격표시를 할 때 등

6.3.3 허위광고를 한 경우

6.3.4 상기 6.2항에 의한 제품인증마크 표시정지처분을 받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6.3.5 제품인증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인증 받은 자가 홍보 및 광고를 하여 인증기관과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6.3.6 기타 제품인증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1) 인증 받은 자의 제조공장이 부도·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증마크 표시제품의 제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